

第27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8號

國會事務處

2008年2月22日(金) 午後 5時

議事日程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2.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1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附議된案件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4
2.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4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4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5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5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홍 · 고진화 · 고희선 · 고희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5
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3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주승용 · 신중식 · 이인기 · 유선호 · 김명자 · 서갑원 · 김학송 · 정병국 · 정의용 · 김홍업 · 김송자 · 김재경 · 장복심 · 이영호 · 채일병 · 김재운 · 최인기 · 정의화 · 조정태 · 윤원호 · 이종걸 · 우윤근 · 이상열 · 김우남 · 정세균 · 강창일 · 안상수 의원 발의)	13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
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위원장 제출)	16
1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홍 · 고진화 · 고희선 · 고희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17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제출)	18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제출)	18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제출)	18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

(18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교섭단체 간에 일부 의견 절충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본회의에서 오는 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의결하였습시다라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홍·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균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2.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홍·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균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홍·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균현·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
 현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
 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
 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
 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
 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
 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
 료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
 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
 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
 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
 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
 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
 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
 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
 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
 언 · 정몽준 · 정문현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
 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
 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
 원 발의)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
 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
 재철 · 안경료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
 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
 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
 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
 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
 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
 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
 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
 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
 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현 · 정병국 · 정
 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
 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
 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
 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
 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
 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
 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
 료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
 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
 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
 진 · 이군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
 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
 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
 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
 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
 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
 언 · 정몽준 · 정문현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

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18시1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갑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 30일, 2월 1일, 2월 4일 그리고 2월 2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부 등 폐지 예정인 5개 부처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차관급 조직으로 변경되는 국가보훈처, 법제처의 기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보고 사항 및 전체회의 시 제기된 대체토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 6인 회담의 최종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조정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통일정책 및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조정을 위해 전담부처로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가족정책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과 기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신설되는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라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체육행정 및 관광정책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임업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등에서 누락 및 오기 사항을 정정·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8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며 현행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담당하게 하고 그 명칭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등 분산돼 있던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권한 등을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원호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입니다.

그저께 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정부조직의 개편 과정이 여성·가족·보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절실히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성계·보육계 여러분들과 전국적으로 여가부 존치 서명에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 나아가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은 100인의 사회지도층 남성분들, 모두 저와 같은 황망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길이 고작 여성·가족·보육 정책을 분리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여성 유권자들에게 참으로 죄스러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의 협상으로 타결되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결과는 여성 정책을 고립시키고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분리하여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에 단순히 병합시켜 버리는 안으로 제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여성 정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이제 막 보편 정책으로 성장하려던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으로 왜소화시킬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수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치열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2의 성장과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질적 확대와 저출산 대책의 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 또한 경제성장률과 안정된 일자리,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양질의 양육 환경 그리고 가족의 안정과 통합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기적으로 여성 정책, 보육·가족 정책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보육 및 가족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산 1조 5000억 규모의 여성가족부를 보육 예산 1조 4000억, 가족 예산 780억을 뺀 초미니 과 정도의 부처로 전락시키는 안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 460억만 남는, 부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로 전락된 것입니다.

2001년 여성부 출범 당시보다도 기능이 축소된 여성부를 만들어 놓고 여성부를 존치시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화시켜야 할 여성·가족·보육 정책을 거꾸로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정책을 보육과 가족 정책과 분리하여 고립시키고 가족·보육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협소하게 취급함으로써

써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더 확대·강화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 타당하며 최소한 현 부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노르웨이·영국·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여성·아동·가족 정책을 하나의 부처 안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여성·가족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합하여 부 단위로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 없는 효율은 내용 없는 형식이며 목적 없는 수단일 뿐입니다. 가족·보육 정책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사소하게 다루어져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중심 정책이 되어야만 정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가족·보육 정책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적인 조직 개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태산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두 번씩이나 속이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여성·가족 정책을 약화시키는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표결은 국민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하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되돌려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 가족이 웃지 않고는 매달 월급봉투를 손에 쥐다고 하여도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여성과 남성, 아동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윤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의원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철학이 없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밀실 흥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은 총선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원칙이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 기구도 없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흥정만 오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선자는 시급하다며 덜컥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정부 부처를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새로운 국무위원 선임이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어 활용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존폐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생사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여성부가 부활했습니다. 부처 존치 필요성 여부는 뒷전이고 흥정만 횡행했을 뿐임을 반증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부처는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그리고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표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는 시대착오적인 조직도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융합된 조직이라서 5년 뒤에 다시 쪼개질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 차원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농촌·농업·농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2월 국회 이

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합의는 그야말로 반농업·반농촌이자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농민 표를 의식한 농민 녹이기의 전형적인 당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소신도 오간 데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국정 철학도 엿볼 수 없습니다. 시대정신도 말살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무원칙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3면이 바다인 우리로서는 바다가 곧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해운 물류, 해양 자원, 해양 과학, 해양 유전, 해양 환경 등 해양으로 뻗어나갈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해수부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둘째,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량과 농촌 자원 개발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만 합니다. 조직의 존폐 문제를 4월 이후 재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대농민 사기극일 따름 아닙니까?

셋째, 부처를 통폐합하여 대부처제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처가 통합된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이 간소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구조조정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부 조직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7대 이명박 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무원칙한 태도, 그리고 몇몇 부처를 살리는 데 급급하여 밀실에서 합의에 응한 통합민주당은 기형적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낸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은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4월 이후에 처리하고 그전까지는 기존의 조직 체제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정부인 것입니다. 두 정당이 밀실 합의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루속히 민의를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양당의 밀실 야합의 결과인 만큼 총선 이후에 민의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표결에서는 부디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김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문제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8부4처를 15부2처로 축소시키는 개편안을 양당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듯 이번 개편안 논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비교섭정당은 물론 각계의 의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부처의 공공적 역할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힘 있는 부처는 더욱 강화하면서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부처는 더욱 약화시키는 ‘강익강 약익약’ 방식임이 자명합니다.

특히 경제부처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한국의 정부조직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은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도 기존 상호견제 체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경제부처를 대부처로 전환하여 기존의 막강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과거에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했던 재정경제원으로 회귀하자는 안입니다. 더구나 개편안은 재벌 대기업 편향의 규제 완화를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존치하기로 하였으나 가족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면서 지나치게 축소시켜 노른자위가 빠져 버린 계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송특위의 대통령 직속기구 재편은 언론인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열린 공론장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과 도구이기에 그동안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이번 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한 것은 행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군사독재시절의 발상을 방불케

하는 안입니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을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산업을 일원화한 결단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농진청과 산림청, 수산과학원과 산림과학원 등을 다시 농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결정에는 그나마 농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끝끝내 분리시켜 폐지해 버린 이번 안은, 우리의 미래산업이자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1차 산업인 수산정책을 펼쳐 가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해양환경 분야를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보내 버린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바다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 무모한 갯벌 매립으로 인한 자체 정화작용의 상실로 말미암아 생태환경이 오염되어 적조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륙 영토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해양환경 문제를 수산 분야의 품에서 떼어 내어서 그것도 환경부도 아닌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보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지금 수산, 해양교통, 항만관리,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정부의 공익적 역할은 축소되게 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해운·항만 업무가 통합되는 국토해양부는 거대한 개발부처로서 토건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 보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경부운하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편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조직법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저는 윤원호 의원 등이 낸 수정

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든 진통 끝에 오늘 지금 드디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6자회담도 있었고 원내대표 회담도 있었고 술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통에 인사청문회가 27, 28일날 열리고 임명을 29일날 하게 됩니다. 벌써 닷새 동안의 국정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랄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국회의원님께서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윤리가 실종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내 지도부를 왜 뽑았습니까? 정당의 지도부를 왜 뽑았습니까?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대표로 가서 협상을 해 주라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우리들이 추인을 하고 인정을 하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가 이렇게 가서 합의해 온 것은 당을 대표한 것인 만큼 당연입니다. 그 당론을 스스로 위배하시겠다는 것도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개별적으로 의안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의원들끼리 모여서 정당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서운함은 남습니다.

다른 모든 의원님들, 이 같은 잘못된 수정안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원안대로 투표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초에 이 법안을 냈을 때는 여성부를 폐지하자고 냈잖습니까? 그러나 협의 끝에, 어려운 협상 끝에 여성부를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여성부를 존치시키자라는 뜻을 충분히 짐작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가족부로 만들자라는 뜻도 충분히 의미는 짐작하셨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영·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키우는 데 여성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족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여성부 쪽에서야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한이 커지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요. 덩치 줄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덩치 줄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난산 끝에 양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것을 일부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또 원 위치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넘어온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수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도부에서 어렵사리 합의한 것도 통과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의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점들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수정안에는 절대 찬성하지 마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득 장향숙 의원님 하시렵니까?

그러면 장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합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향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여성가족부 존치에 관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부로 존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조 5000억 규모의 부처가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것은 여성부라는 것이 결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고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그 어떤 것도 정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빈껍데기의 여성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에서 많은 고심 하고, 많은 토론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여성권력화 되어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의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드러낸 이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여성유권자 전체와 함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원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한 번도 제대로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던 것은 여성운동가,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많은 여성계의 성원을 입고 국회에 등단해 온 저희 여성의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입을 다무는,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몸부림쳐왔던 지난 한 달간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여성부 존치라는 것은 결국은 여성부의 여성정책 자체에 대한 축소와 위상 격하뿐만 아니라 여성계의 지지도, 보육계의 지지도, 가족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어떤 것도 담보해 낼 수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명박 당선인과 통합민주당에서 여성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냐고 여성계와 보육계에서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주변

업무로 취급되어 오던 보육과 가족 업무를 이관 받아서 불과 2년 동안 보육과 가족 업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 가족 변화,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위기는 여성 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이나 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 문제와 가족 해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성과 보육, 가족을 분리한 여야 정부조직개편 여성부 존치 결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보육·가족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우리 사회의 여성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양성평등사회를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으로써 여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래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를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유권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또 많은 남성유권자 여러분도 저의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득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51인, 반대 124인, 기권 27인으로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 문안이 하도 많아서요, 단말기 몇 쪽부터 통과시킨 법안이 나오는지…… 단말기에 법사위의 수정안이 어디에 있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원안에 대한, 이미 설명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장내 소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3인, 기권 13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 반대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

한선교 의원 발의)

(19시01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8항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李惠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울 서초구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입니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 요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결격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이혜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주승용·신중식·이인기·유선호·김명자·서갑원·김학송·정병국·정의용·김홍업·김송자·김재경·장

복심·이영호·채일병·김재윤·최인기·정의화·조경태·윤원호·이종걸·우윤근·이상열·김우남·정세균·강창일·안상수 의원 발의)

(19시03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9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계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접근교통시설 계획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국가가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셋째 호텔 등 관광사업 시설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도록 공익적인 영역인 박람회 직접시설로 부담금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넷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의제조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계획 변경 등을 의제조항에서 제외하였으며, 다섯째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의 성격이 크므로 사업의 지원 및 시행 주체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되 압도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이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9시0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0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홍문표**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예산·홍성 출신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문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과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또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 및 류근찬 의원과 본 의원이 소개한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류유출사고 특별대

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 태안 관련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태안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 유류사태와 주민들의 절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선후보뿐만이 아니라 각 당 정당들은 이 태안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약과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양당 원내대표는 태안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도 하셨습니다. 정부 역시 조속한 사고처리와 피해보상 지원 및 환경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태안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네 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법안심사 과정에 동료 의원들은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히 제시

했고 정부가 법안도 아닌 페이퍼 식의, 국무위원 관련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한 그 안을 던졌을 때 100% 그 안으로 받아서 성안을 해 버린 것입니다. 네 당에서 요청했던 중요한 사안들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단 하나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당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각 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당이 제출한 그리고 청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부와 다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대로 수용한 것이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태안특별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적절한 피해보상과 오염된 생태환경 복원, 사고원인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갯벌에 나가 하루하루 굴을 캐며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에게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유조선 사고에서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한도를 넘는 보상이 어려워 피해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사고 책임자인 삼성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연명하기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거보전비용의 지급 역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업인들에 대한 휴·폐업 지원이나 미신고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 역시 법에 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엑손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미국 정부는 직·간접 피해보상은 물론 청소비까지 남김없이 피해주민에게 지급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리카호 사건과 스페인의 프레스테지호 사건의 경우 프랑스 정부와 스페인 정부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약 90% 이상을

피해주민에게 선지급하고 국가가 국제기금과 가해기업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했는지 이 법안 내용을 보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 저도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또한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기름유출 사고 이후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특별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는 데 동의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특별법의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등 동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태안주민들은 연일 두통과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감기 증상, 손톱 밑이 뭉개지고 시력 상실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소변검사에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7배 이상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기금협약의 까다로운 조건에 현재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리고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법안내용에 대해서 심히 말씀드리며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즉시 재개정안을 내서 태안주민들의 절규를 담고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위원장 제출)

(19시18분)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재철·이상민 의원 외 2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병두 의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위헌 결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환급신청을 받아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여 환급해 주도록 하되 이 경우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결과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되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국가의 별도 재원 등으로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 중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제하고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이상민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심재철·이상민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강길부·고경화·

- 고조홍·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강재섭·안택수·안홍

- 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윤두환·이강두·이경제·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원복·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영·이주호·이진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임해규·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진석·정진섭·정형근·정화원·정희수·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차명진·최경환·최구식·최병국·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19시22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홍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을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정부조직 관련 법률안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 실업 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간, 지역 간, 사업 간 업무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2004년 11월 30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에서 청년실업의 대책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각 부처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안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9시2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이상배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구성된 이래 2008년 2월 2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19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7개 정치관계법 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해서 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26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책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배부·발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율을 확대하고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당내 경선후보자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되 선거가 임박한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활동 중인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하한선을 10만 4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31만 2000명으로 정함으로써 최 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 대 1 범위 내로 설정했습니다.

인구상한선 초과로 인해서 경기 용인시갑·를 선거구, 경기 화성시 선거구, 광주 광산구 선거구를 분구하였으며,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와 전남 강진군·완도군 선거구를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245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해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음 18대 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과 석패율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선거구 수를 인구등가성을 고려해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도록 검토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부 대
상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경
우 그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당내 경
선의 공정성 확보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
법적 정치자금 모금 사용 보장을 위해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한 자의 명단 공개기
준을 연간 12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
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부의장 이상득 이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4인
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시32분)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
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원
호 의원 외 40인 발의)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51인)

강 기 갑	강 혜 숙	김 교 홍	김 낙 순
김 덕 규	김 영 대	김 영 주	김 재 윤
김 태 년	김 형 주	김 홍 업	김 희 선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백 원 우
서 갑 원	서 혜 석	손 봉 숙	신 기 남
신 명	신 학 용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홍	유 선 호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미 경
이 시 중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중 결	장 영 달	장 향 숙	정 봉 주
정 세 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정 식	천 정 배	최 규 성	최 성
최 순 영	한 명 숙	홍 미 영	

반대 의원(124인)

강길부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자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자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종인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학원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류근찬	노현송	맹형규	문희	문희상
맹형규	박계동	박명광	박성범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서혜석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형일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엄호성	우상호	유기준	유승민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형일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이경제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이근식	이낙연	이방호	이상득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원복	이윤성	이재오	이재웅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한구	임태희	임해규	전여옥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정문헌	정병국	정의용	정의화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재오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전병헌
최병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기권 의원(27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고진화	김성곤	김애실	김진표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노현송	문석호	문희	서재관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선병렬	신국환	안민석	우제항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원희룡	유인태	이계경	이기우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임종석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최병국	최성	최인기	최재천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채일병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3인)

강기갑	강혜숙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재윤	김종인	김춘진
김형주	김희선	류근찬	문석호
민병두	서갑원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심대평	우원식	윤원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64인)

강길부	강재섭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이 경 숙 이 은 영 이 종 결 장 영 달
 장 향 숙 정 세 균 제 종 길 조 배 숙
 채 수 찬 최 순 영 최 용 규 한 명 숙
 홍 미 영

기권 의원(13인)

김 덕 규 김 영 대 김 태 년 문 학 진
 백 원 우 선 병 렬 양 승 조 윤 호 중
 이 미 경 이 인 영 정 봉 주 주 승 용
 지 병 문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진 표 신 명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명 광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방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명 광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김송자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서갑원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서혜석	신명	손봉숙	신국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신기남	심재엽	신상진	신학용
이재오	이재창	이재구	이종걸	심대평	안상수	심재철	안명옥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안민석	양형일	안택수	안홍준
이혜훈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양승조	우원식	엄호성	오영식
장경수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우상호	원희룡	우윤근	우제항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원혜영	유승민	유기준	유기홍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유선호	윤원호	유인태	유정복
정세균	정의용	정희화	정장선	윤건영	이경숙	이계경	이강두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이경숙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한명숙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황우여	황진하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재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반대 의원(1인)

김재윤

기권 의원(2인)

김영숙 최용규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채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재윤

기권 의원(1인)

최용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안명욱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안엄호 안오영
 우상호 우원식 안우윤 안우제
 원혜영 원희룡 안유기 안유기
 유선호 유승민 안유인 안유정
 윤건영 윤원호 안윤호 안이강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재윤

기권 의원(1인)

김영대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이강두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계진 이규택 이경제 이계경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열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낙성

(채수찬 의원 착오로 박영선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2인, 기권 의원 1인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신명 이방호

(이혜훈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2인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갑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형주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석 장경수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형오 최경환

기권 의원(6인)

김명자 김성곤 박세환 심대평
 유승민 이혜훈

(박찬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1인, 기권 의원 6인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
 한 수정안(심재철·이상민 의원 외 269인 발의)**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갑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9인)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안명옥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서혜석 신국환 신명 신학용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유선호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주영 이경재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진구 이혜훈 임태희 장경수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원영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진구 이혜훈 임태희 장경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한명숙 홍문표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채일병

반대 의원(1인)

김재윤

기권 의원(1인)

이원영

(김무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61인, 찬성 의원 159인임)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국환 신명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임태희 장경수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원영
 이진구 이혜훈 임태희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홍미영
 홍재형

반대 의원(4인)

남경필 선병렬 심대평 이기우

기권 의원(4인)

서갑원 우윤근 유인태 이인영
 (남경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9인, 반대 의원 3인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6인)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9인)

강길부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속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국 환
 신 명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태 희 장 경 수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속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국 환 신 명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중 석 임 태 희 장 경 수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최 용 규

기권 의원(2인)

유 인 태 이 인 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길 부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출석 의원(22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세환
 박근혜 박명광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우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영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우원혜 영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해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1인)

박영선

○청가 의원(17인)

강봉균 권오을 김원웅 김재원
 노영민 송영길 심재덕 유재건
 이광재 이병석 이상열 이해봉
 이화영 조정태 최규식 최연희
 최철국

○출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

○출석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제1차관 김석동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서남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태량
 입법차장 도재문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위원 (유승삼·제갈용우)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유인태 노현송 박기준 이인영 최규식 홍미영	통합 민주당	2008. 2. 19
	정갑윤 권경석 김재원 김정권 유기준 정두언	한나라당	
	김선미	비교섭단체 (참주인연합)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박기준	통합민주당	2008. 2. 20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낙성	박상돈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	2008.2.21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방송통신특별	정종복	심재철	한나라당	2008.2.21
	서상기	장윤석		2008.2.22

○의안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08. 2. 19 이인영 · 이미경 · 김영춘 · 정세균 · 우원식 · 권오을 · 고진화 · 임종석 · 윤호중 · 이경숙 · 김형주 의원 발의)

2월 20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19 최성 · 신중식 · 문학진 · 장향숙 · 강혜숙 · 이원영 · 노현송 · 이상경 · 염동연 · 우윤근 · 이시중 · 김홍업 의원 발의)

2월 2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008. 2. 19 이규택 · 김용갑 · 임인배 · 정희수 · 김석준 · 김학송 · 고조홍 · 정진섭 · 김태환 · 한선교 · 김충환 · 최연희 의원 발의)

2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제갈응우) 선출안

(2008. 2. 19 의장 제의)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유승삼 · 제갈응우)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남주홍)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2 대통령당선인 제출)

이상 2건 2월 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도연)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상희)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인사청

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박은경)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영희)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이상 2건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경한)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강만수)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19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정종환)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0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이윤호)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0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농림부장관 정운천)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0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원세훈)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1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이춘호)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2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2월 2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2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2월 21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2. 20 엄호성 · 정의화 · 문희 · 김재경 · 이성권 · 서병수 · 안명옥 · 유승민 · 장윤석 · 진영 · 이재웅 · 이혜훈 · 강길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2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20 엄호성·정의화·문희·김재경·이성권·서병수·안명옥·유승민·장윤석·진영·이재웅·이혜훈·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 2. 22 교육위원장 제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8. 2. 22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08. 2. 22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08. 2. 22 의장 제의)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3일간)

○의안 심사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개정경제위원장 보고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강길부·고경화·고조흥·고진화·고희선·고홍길·공성진·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기현·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권·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학원·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문희·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신상진·심재엽·심재철·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
 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
 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
 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
 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
 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
 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
 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
 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
 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
 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
 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 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
 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
 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홍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

홍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6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8. 1. 14 김성곤 · 주승용 · 신중식 · 이인기 · 유선호 · 김명자 · 서갑원 · 김학송 · 정병국 · 정의용 · 김홍업 · 김송자 · 김재경 · 장복심 · 이영호 · 채일병 · 김재윤 · 최인기 · 정의화 · 조정태 · 윤원호 · 이종걸 · 우윤근 · 이상열 · 김우남 · 정세균 · 강창일 · 안상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31 문석호 · 정세균 · 강봉균 · 박병석 · 김덕규 · 한병도 · 정봉주 · 김영춘 · 오영식 · 염동연 · 김현미 · 임종석 · 서갑원 · 정갑윤 · 김영주 · 박상돈 · 김재홍 · 박명광 · 오제세 · 채수찬 · 제종길 · 우원식 · 문병호 · 이상

민 · 우윤근 · 서재관 · 우제항 · 홍재형 · 최규성 · 김홍엽 · 김우남 · 이경숙 · 이은영 · 윤호중 · 김희선 · 문학진 · 김재윤 · 이목희 · 박찬석 · 김종률 · 유인태 · 신기남 · 이인영 · 김근태 · 유재건 · 정장선 · 천정배 · 조성태 · 송영길 · 류근찬 · 김성곤 · 안영근 · 우제창 · 이원영 · 서혜석 · 김선미 · 이기우 · 권선택 · 광성문 · 이석현 · 신국환 · 최재천 · 이계안 · 주승용 · 유필우 · 정의용 · 장경수 · 정청래 · 이종걸 · 나경원 · 김춘진 · 우상호 · 윤건영 · 서병수 · 이종구 · 홍미영 · 지병문 · 이낙연 · 문희상 · 최연희 · 최인기 · 정진석 · 김낙성 · 신학용 · 김명자 · 이근식 · 김원웅 · 백원우 · 김태년 · 윤원호 · 강창일 · 유선호 · 김교홍 · 배기선 · 김영대 · 양승조 · 김낙순 · 변재일 · 조일현 · 원혜영 · 이미경 · 홍창선 · 신명 · 조배숙 · 장복심 · 노현송 · 이영호 · 장영달 · 이상열 · 최경환 · 최용규 의원 발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8. 1. 24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김학원 · 안명옥 · 안홍준 · 이주영 · 이진구 · 정갑윤 · 허천 · 홍문표 의원 외 122인 발의)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2008. 1. 29 심대평 · 김낙성 · 류근찬 · 권선택 · 광성문 · 신중식 · 홍문표 · 최인기 · 이승희 · 우윤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5. 8. 18 이경숙 · 안민석 · 황우여 · 이재오 · 엄호성 · 이원영 · 김태년 · 김희선 · 강혜숙 · 김애실 · 서혜석 · 장향숙 · 김현미 · 박상돈 · 심재덕 · 한광원 · 한명숙 · 유승희 · 장영

달 · 홍미영 · 조배숙 · 최순영 · 이미경 · 이은영 · 최규성 · 민병두 · 유시민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4 이상배 · 박세환 · 박찬숙 · 김재원 · 황우여 · 안상수 · 이해봉 · 엄호성 · 홍문표 · 고경화 · 이인기 · 임인배 · 광성문 · 이성권 · 김석준 · 권오을 · 정희수 · 김광원 · 이영호 · 김영덕 · 안병엽 · 이혜훈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 · 김애실 · 이강두 · 이재웅 · 진영 · 김기현 · 윤건영 · 유기준 · 정희수 · 정화원 의원 발의)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5. 18 안명옥 · 최경환 · 정화원 · 진수희 · 이강두 · 이주호 · 박찬숙 · 정의화 · 엄호성 · 신상진 · 윤건영 · 배일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7 장복심 · 오제세 · 고경화 · 박찬석 · 채일병 · 박상돈 · 한광원 · 조정식 · 우원식 · 우윤근 · 박영선 · 남경필 · 변재일 · 김태년 · 강성종 · 김명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7. 5. 17 강기갑 · 권영길 · 김성곤 · 김재윤 · 김태홍 · 노회찬 · 단병호 · 류근찬 · 박세환 · 배일도 · 심상정 · 이영순 · 정병국 · 정성호 · 채일병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홍문표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007. 5. 18 권오을 · 이인기 · 권철현 · 김우남 · 한광원 · 이경제 · 이성권 · 우윤근 · 김낙성 · 이방호 · 이상배 · 최규성 · 조경태 · 이강두 · 홍문표 · 이영호 · 서재관 · 강기갑 · 김영덕 · 신중식 · 이계진 · 정세균 · 김형오 · 윤건영 · 정중복 · 신상진 · 박승환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7. 6. 7 김재원 · 이해봉 · 엄호성 · 한선교 · 신상진 · 김정권 · 이방호 · 박세환 · 안상수 · 김영선 · 김광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07. 6. 12 김춘진 · 이영호 · 최철국 · 홍미영 · 노영민 · 조성래 · 선병렬 · 한광원 · 김우남 · 최규성 · 이시중 · 박영선 · 강창일 · 신명 · 이인영 · 김기춘 · 윤원호 · 송영길 · 김영춘 의원 발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문병호 · 엄호성 · 박재완 · 유필우 · 이영호 · 김덕규 · 한광원 · 장향숙 · 이광철 · 이기우 · 정화원 · 신학용 의원 발의)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1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 21 안상수 · 강길부 · 고경화 · 고조흥 · 고진화 · 고희선 · 고흥길 · 공성진 · 권경석 · 권영세 · 권오을 · 권철현 · 김광원 · 김기춘 · 김기현 · 김덕룡 · 김명주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양수 · 김영덕 · 김영선 · 김영숙 · 김용갑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권 · 김정훈 · 김충환 · 김태환 · 김학송 · 김학원 · 김형오 · 김희정 · 나경원 · 남경필 · 맹형규 · 문희 · 박계동 · 박근혜 · 박성범 · 박세환 · 박순자 · 박승환 · 박재완 · 박종근 · 박진 · 박찬숙 · 박형준 · 박희태 · 배일도 · 서병수 · 서상기 · 송영선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안명옥 · 강재섭 · 안택수 · 안홍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윤두환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경 · 이계진 · 이근현 · 이규택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상배 · 이성구 · 이성권 · 이원복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재창 · 이종구 · 이주영 · 이주호 · 이진구 · 이한구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태희 · 임해규 · 장윤석 · 전여옥 · 전재희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의화 · 정종복 · 정진석 · 정진섭 · 정형근 · 정화원 · 정희수 · 주성영 · 주호영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 최경환 · 최구식 · 최병국 · 한선교 · 허천 · 허태열 · 홍문표 · 홍준표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4. 11. 2 조정식 · 정성호 · 백원우 · 조경태 · 김형주 · 우원식 · 김영주 · 제종길 · 장목심 · 이목희 · 김태년 · 이화영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5. 2. 4 조정식 · 이계경 · 엄호성 · 신상진 · 김동철 · 이성권 · 박상돈 · 김종률 · 김태년 · 백원우 · 김영주 · 정문헌 · 이해봉 · 조성래 · 심재덕 · 정성호 · 신학용 · 김부겸 · 안병엽 · 노현송 · 제종길 · 김형주 · 이목희 · 장목심 · 안상수 · 선병렬 · 고진화 · 이경재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6. 8. 23 조정식 · 김덕규 · 김형주 · 안상

수·백원우·단병호·진수희·이혜훈·강혜숙·이경숙·이화영·박계동·박재완·제종길·신기남·강길부·이해봉·장복심·류근찬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심재철·곽성문·엄호성·이인제·박세환·이상배·고홍길·주호영·김무성·정종복·김용갑·김석준·정희수·심재덕·이한구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6 신상진·김정권·안상수·심재엽·유기준·이성구·고조홍·이인기·김애실·김영숙·차명진·김명주·임혜규 의원 발의)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3 제종길·단병호·남경필·노영민·심재덕·양승조·우제창·이기우·이병석·이석현·장경수·홍재형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20 정성호·강창일·유필우·이광철·이근식·한명숙·심재덕·장경수·김선미·서갑원 의원 발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7. 12. 4 주승용·조일현·정성호·강봉

균·김춘진·엄호성·박상돈·최철국·장복심·우윤근·심재덕·정봉주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1 한광원·박찬석·우제항·이호웅·신학용·노용래·장복심·강길부·송영길·이시종·김혁규·심재덕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1. 16 장복심·선병렬·엄호성·박형준·송영길·박상돈·장경수·노용래·한광원·홍재형·우원식·조정식·강길부 의원 발의)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개정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5. 7. 13 노영민·주승용·김종률·최인기·채수찬·김양수·조경태·박승환·이시종·장복심·김혁규·심재엽·박상돈·신중식 의원 발의)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개정 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배일도·임종인·강기갑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이성구·고조홍·최구식·박찬숙·송영선·김학송·이명규·신상진·박재완·공성진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4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엄호성·이명규·박형준·조성래·정종복 의원 발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이성구·고조홍·최구식·박찬숙·송영선·김학송·이명규·신상진·박재완·공성진 의원 발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4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環境管理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황진하·박재완·신상진·공성진·고조홍·박계동·맹형규·송영선·엄호성 의원 발의)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7. 4. 9 우원식·노영민·배일도·서갑원·신중식·우윤근·이목희·장복심·장향숙·조성래·제종길·최규성 의원 발의)

環境管理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

원 대표발의)
(2005. 8. 26 신상진·유기준·엄호성·박세환·김재경·윤건영·유정복·박찬숙·배일도·심재철·정희수·서재관·정두언·김재원·서혜석·안상수·고경화·김애실·박계동·고조홍·박재완·김태년·제종길·장복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3 제종길·단병호·남경필·노영민·심재덕·양승조·우제창·이기우·이병석·이석현·장경수·홍재형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신상진·이경재·박찬숙·정병국·이인기·박계동·배일도·이원복·권오을·한선교·차명진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3 제종길·단병호·남경필·노영민·심재덕·양승조·우제창·이기우·이병석·이석현·장경수·홍재형 의원 발의)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9 이낙연·김부겸·김영춘·노현송·신상진·심재덕·엄호성·이상민·정진석·채일병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4. 27 이명규·김명주·박재완·신상진·엄호성·이성권·이윤성·이재웅·이해봉·한선교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황진하·박재완·신상진·공성진·고조홍·박계동·맹형규·송영선·엄호성 의원 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배일도·박계동·신상진·정두

언 · 김정권 · 신명 · 이재오 · 김춘진 · 김영
숙 · 주성영 · 차명진 · 이석현 의원 발의)

勞働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8 이경재 · 신상진 · 김형주 · 이해
봉 · 신중식 · 배일도 · 안홍준 · 한선교 · 맹형
규 · 정진섭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
의)

(2006. 12. 29 정병국 · 고경화 · 임태희 · 임해
규 · 배일도 · 차명진 · 박기춘 · 이규택 · 남경
필 · 정진섭 · 정장선 의원 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 11. 5 이호웅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
민 · 정성호 · 염동연 · 원혜영 · 안상수 · 이원
영 · 신학용 · 이재오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
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시중 · 우제창 · 백원
우 · 황우여 · 정청래 · 오제세 · 심재덕 · 엄호
성 · 신중식 · 김교홍 · 유선호 의원 발의)

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 11. 5 이호웅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
민 · 정성호 · 염동연 · 원혜영 · 이원영 · 박재
완 · 신학용 · 이재오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
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시중 · 우제창 · 백원
우 · 황우여 · 정청래 · 오제세 · 심재덕 · 엄호
성 · 신중식 · 김교홍 · 유선호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04. 8. 23 박순자 · 강성중 · 김문수 · 김성
곤 · 김영숙 · 김영춘 · 김재원 · 김태년 · 노웅
래 · 류근찬 · 박기춘 · 서병수 · 심재덕 · 심재
철 · 안상수 · 안택수 · 오제세 · 유승민 · 유정
복 · 윤건영 · 이군현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
연 · 이상득 · 이상락 · 이인기 · 이재오 · 이해
봉 · 조승수 · 진수희 · 한병도 · 허천 의원 발
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
의)

(2006. 9. 14 박재완 · 신상진 · 엄호성 · 배일
도 · 심재철 · 이성구 · 공성진 · 이경재 · 이주
호 · 김애실 · 윤건영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4. 8. 18 고경화 · 심재철 · 이승희 · 정두
언 · 노웅래 · 윤건영 · 안명옥 · 이상배 · 전재

희 · 김양수 · 이군현 · 김영덕 · 진수희 · 임태
희 · 정화원 · 제종길 · 이근식 · 정문현 · 이원
영 · 정청래 · 장복심 · 이경재 · 배일도 · 김석
준 · 강재섭 · 김영춘 · 이인기 · 현애자 · 유승
민 · 이기우 · 권영길 · 허천 · 박찬숙 의원 발
의)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
표발의)

(2005. 2. 4 배일도 · 이재오 · 김문수 · 박계
동 · 박세환 · 김영숙 · 고진화 · 박승환 · 이성
권 · 박순자 · 안경률 · 정종복 · 이명규 · 안명
옥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
표발의)

(2005. 5. 13 엄호성 · 이혜훈 · 서병수 · 박세
환 · 권경석 · 김무성 · 김석준 · 김문수 · 강재
섭 · 송영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
표발의)

(2005. 9. 5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
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
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근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
표발의)

(2006. 5. 26 안명옥 · 김영선 · 이계경 · 엄호
성 · 배일도 · 정의화 · 김석준 · 신상진 · 서상
기 · 김영숙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
표발의)

(2005. 6. 20 배기선 · 원혜영 · 신기남 · 최재
성 · 엄호성 · 정봉주 · 김태년 · 정성호 · 유기
홍 · 한병도 · 주승용 · 김태홍 · 지병문 · 임종
석 · 장항숙 · 맹형규 · 최성 · 이규택 · 박기
춘 · 정청래 · 김희선 · 김선미 · 유정복 · 서갑
원 · 구논희 · 이은영 · 유승희 · 이영호 · 백원
우 · 이해봉 · 한명숙 · 심재철 · 황우여 · 신국
환 · 노현송 · 이상경 · 이근식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
표발의)

(2006. 12. 26 김선미 · 김동철 · 이종걸 · 조경
태 · 배기선 · 정성호 · 박영선 · 이성권 · 김희
정 · 노웅래 · 김재윤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2 문희 · 서재관 · 이계경 · 신상진 ·
심재철 · 박상돈 · 김태년 · 공성진 · 박재완 ·

엄호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 발의)

(2007. 3. 15 이계경·임태희·김애실·엄호성·신상진·이성권·이승희·김석준·박계동·서혜석·문희·차명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 발의)

(2007. 4. 12 이성구·김재원·황우여·고조홍·이성권·신상진·김영숙·안홍준·송영선·김학송·이명규·이해봉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

(2007. 4. 27 김영숙·김충환·홍미영·안홍준·김무성·박순자·배일도·고조홍·이원복·고경화·고홍길·이윤성·서상기·나경원·김희정·진수희·차명진·장복심·김명주·정진섭·한선교·김성조 안명옥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7. 5. 29 엄호성·이계경·이상배·김정훈·이성구·윤건영·이성권·김애실·주성영·정갑윤·최구식·김재윤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 발의)

(2007. 9. 10 배일도·이경재·최철국·안명옥·김애실·신상진·김영덕·김춘진·서병수·이재오·김형주·진영·이목희·박계동·한선교 의원 발의)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황진하·박재완·신상진·공성진·고조홍·박계동·맹형규·송영선·엄호성·이군현 의원 발의)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04. 10. 2 전병헌·구논희·정성호·이시종·조일현·노현송·김태년·엄호성·최인기·우제창·서재관·안병엽·유승민·김영주·김영춘·이광철·심재덕·정두연 의원 발의)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05. 9. 27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

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08. 1. 31 정갑윤·정두연·권경석·김정권·유기준·안경률·김기현·김기춘·김재원·이상배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2007. 12. 3 제종길·단병호·남경필·노영민·심재덕·양승조·우제창·이기우·이병석·이석현·장경수·홍재형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권오을·곽성문·이성권·임인배·김성조·권경석·김정권·서상기·김광원·최경환·정종복·김무성·남경필·주성영·김재윤·김재원·이인기 의원 발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7. 5. 11 송영길·강기갑·권영길·김교홍·김부겸·김정권·김효석·김희선·문석호·박찬석·선병렬·신명·신학용·심상정·안영근·우상호·우원식·우제창·유선호·유인태·이광철·이상민·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종걸·임종석·장복심·정성호·정장선·조성래·최순영·한광원·현애자 의원 발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12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태홍·강창일·이원영·문병호·박계동·임종인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

김덕규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6. 9. 5 이원영 · 정동채 · 장윤석 · 김재윤 · 이영호 · 박상돈 · 김종률 · 강기정 · 정의화 · 김태년 · 양승조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3 김충환 · 신상진 · 정갑윤 · 안명옥 · 이인기 · 공성진 · 안택수 · 박찬숙 · 심재철 · 김태환 의원 발의)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廢止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12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김태홍 · 강창일 · 이원영 · 문병호 · 박계동 · 임종인 의원 발의)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2004. 7. 13 전재희 · 이재오 · 황우여 · 심재철 · 박세환 · 유정복 · 이인기 · 김재원 · 정병국 · 정종복 · 정성호 · 박재완 · 김석준 · 유승민 의원 발의)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채수찬 · 김명주 · 김양수 · 김종률 · 김재원 · 김혁규 · 노영민 · 박기춘 · 박승환 · 심재엽 · 우제창 · 이계안 · 이목희 · 이시종 · 이인기 · 최규성 · 최인기 의원 발의)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4. 12 이성구 · 김재원 · 황우여 · 고조홍 · 이성권 · 신상진 · 김영숙 · 안홍준 · 송영선 · 김학송 · 이명규 의원 발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 19 차명진 · 고흥길 · 권영세 · 김영선 · 나경원 · 남경필 · 박순자 · 박진 · 배일도 · 심재철 · 안명옥 · 우제창 · 유정복 · 윤건영 · 이경재 · 이계경 · 이군현 · 이규택 · 이운성 · 이재오 · 이종구 · 이주호 · 임태희 · 정두언 · 정병국 · 정진섭 · 진영 · 한선교 의원 발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신상진 · 박찬숙 · 정병국 · 박계동 · 배일도 · 이원복 · 권오을 · 정진섭 · 한선교 · 남경필 · 이경재 의원 발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007. 4. 13 이규택 · 정진섭 · 황진하 · 이재창 · 최연희 · 김용갑 · 권영세 · 우제항 · 이해훈 · 신상진 · 배일도 · 임해규 · 박순자 의원 발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7. 4. 25 차명진 · 고조홍 · 김애실 · 김우남 · 김정권 · 박상돈 · 신상진 · 안상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규택 · 임해규 의원 발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

(2007. 5. 28 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廢止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 9. 14 단병호 · 권영길 · 김재윤 · 노회찬 · 강기갑 · 류근찬 · 심상정 · 안민석 · 이영순 · 이인영 · 이영호 · 이정일 · 이재오 · 이철우 · 조경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최철국 · 현애자 의원 외 1인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

(2007. 5. 28 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 9. 14 단병호 · 권영길 · 김재윤 · 노회찬 · 강기갑 · 류근찬 · 심상정 · 안민석 · 이영순 · 이인영 · 이영호 · 이정일 · 이재오 · 이철우 · 조경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최철국 · 현애자 의원 외 1인 발의)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4. 10. 28 배일도 · 김애실 · 임인배 · 김영숙 · 진수희 · 이재웅 · 박순자 · 이재오 · 박계동 · 김문수 · 고진화 · 공성진 · 이덕모 · 안명옥 · 정두언 · 엄호성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1 이목희 · 김한길 · 김재윤 · 김형주 · 원혜영 · 이시중 · 김덕규 · 김원웅 · 문병호 · 이은영 · 우원식 · 장복심 · 조정식 · 제종길 · 김영주 · 김태년 · 서갑원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5. 5. 12 공성진 · 박재완 · 이해봉 · 이시중 · 이주호 · 엄호성 · 김재원 · 안상수 · 이인기 · 이해훈 · 허태열 · 정두언 · 김영선 · 김재경 · 배일도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7. 6. 1 안홍준 · 안상수 · 정의화 · 이주영 · 이인기 · 윤두환 · 김재경 · 허천 · 이진구 · 정희수 · 허태열 · 차명진 · 이경재 · 김명주 · 김용갑 · 이강두 · 임인배 · 이윤성 · 심재엽 · 이상배 의원 발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 · 황진하 · 박재완 · 신상진 · 공성진 · 고조홍 · 박계동 · 맹형규 · 송영선 · 엄호성 의원 발의)

(이상 86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8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무위원후보자(이춘호)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0 대통령당선인 제출)

국무위원후보자(남주홍)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21 대통령당선인 제출)

이상 2건 2월 22일 제출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승례문 화재참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2. 22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